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47
------------	-------

발의연월일 : 2023. 9. 6.

발 의 자 : 강기윤 · 박덕흠 · 정운천

윤상현 · 이현승 · 김희곤

이종성 · 하영제 · 박대수

백종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 발생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검역-신고-역학조사-관리 등) 및 전달체계(질병청-지자체-의료기관 등) 내 통합·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전파 초기 차단을 위해 검역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심 환자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들을 보건소 등에 제공했으나 연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보공유 자체, 현장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검역소-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29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및 제2항”을 각각 “부터 제3항”으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검역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 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② (생 략)</p> <p><u><신 설></u></p> <p>③ (생 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p>	<p>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검역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u></p> <p><u>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u></p> <p><u>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u></p> <p><u>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u></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 <p><u>⑤ --- 부터 제3항-----</u> ----- ----- ----- -----.</p>

<p>⑤ 제1항 <u>및</u>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⑥ --- <u>부터</u> 제3항----- ----- ----- ---.</p>
---	--